

퇴직연금가입자교육자료

(DC형 / 기업형IRP)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퇴직연금부

□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생활에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

-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자금을 회사가 직접 운용합니다.**
 - ☞ 회사는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직원은 확정된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 ☞ DB형에서 발생된 운용손익은 모두 회사에게 귀속 되기 때문에 직원이 받게 되는 퇴직금은 변동되지 않으며, 직원은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 기업형IRP

-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자금을 직원이 운용합니다.**
 - ☞ 회사는 직원별로 연가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합니다. 적립된 자금은 직원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직원의 퇴직금은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 DC형 / 기업형IRP에서 발생된 운용손익은 모두 직원에게 귀속 되기 때문에 직원이 받게 되는 퇴직금은 운용실적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DC형 / 기업형IRP의 퇴직금 = 회사 납입원금 ± 운용성과]
- **노후 대비를 위해 추가로 본인자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 ☞ 가입자가 본인자금을 추가로 개인형IRP에 납입하는 경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만 50세 이상이며 연간 급여소득 1.2억원(종합소득 1억원) 이하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용)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DB형 및 DC형/기업형IRP 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에서 지급된 퇴직금이 입금되는 통장입니다.**
 -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개인형IRP로 의무적으로 입금되며, 퇴직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이라도 개인형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IRP에 입금된 퇴직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의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 입금된 퇴직금은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만 55세 이후부터는 연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 **노후 대비를 위해 추가로 본인자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 ☞ 가입자가 본인자금을 추가로 개인형IRP에 납입하는 경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만 50세 이상이며 연간 급여소득 1.2억원(종합소득 1억원) 이하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용)

4. 제도별 지급유형 및 수급요건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개인형IRP
지급유형	· 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요건	연금	· 개인형IRP 이전 후 수령		· 만 55세 이상 · 연금수령한도내 인출 ^{주1)} · 연금수령기간 ^{주2)}
	일시금	· 연금 수급요건 미충족시 또는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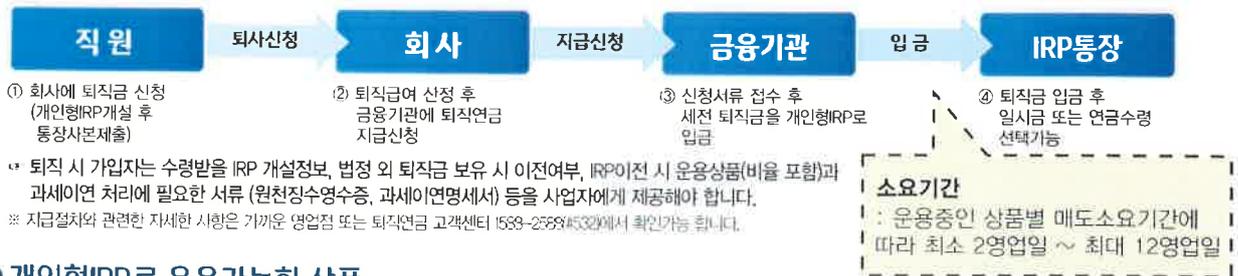
주1) 연금수령한도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적립금 평가 총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주2)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연금수령기간 최소 5년 /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는 연금수령기간 최소 10년

□ 퇴직연금 지급절차(개인형 IRP 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개인형IRP로 입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만 55세 이상 퇴직자/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 외국인 / 사망의 사유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형IRP로 입금하지 않고 입출식 계좌로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절차



● 개인형IRP로 운용가능한 상품

- 개인형IRP에 납입된 적립금은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원리금보장상품 : 퇴직연금정기예금(만기 3개월/6개월/1년/2년/3년/5년), 보험사이율보증형(만기 1년/2년/3년/5년)
 실적배당형상품 : 주식형/주식혼합형/채권혼합형/채권형/MMF
- ※ 개별 상품의 자세한 사항은 IBK기업은행 홈페이지(<http://www.ibk.co.kr>) 또는 퇴직연금 가이드 홈페이지(<http://welcome.ibk.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의 세금

퇴직연금의 세금은 소득원천 및 퇴직금 수령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 됩니다.

소득원천	연금적립	연금 외수령 ^{주3)}	연금 수령
퇴직금	· 과세이연 혜택 ^{주4)}	· 퇴직소득세 · 분리과세	·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 X 60~70%) ^{주4)} · 분리과세
운용수익	-	· 기타소득세(16.5%) · 분리과세	· 연금소득세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가입자 부담금	세액공제 ○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연간 700만원 (50세 이상, 연간 900만원)까지	· 비과세	· 실적연금소득 합산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세액공제 × · 세액공제 혜택 ^{주4)}		

주1) 개인형IRP에 퇴직금을 입금하면 세금이 과세이연 되어 개인형IRP에서 퇴직금을 인출하는 시점까지 세금납부시기가 미루어집니다.

주2) 퇴직연금제도(CC/IRP)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가입자부담금 납입 가능하며, 연간 700만원(만 50세 이상은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50세 이상이며 연간 급여소득 1,2억원 (종합소득 1억) 이하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자는 13.2%, 이하인 자는 16.5%를 적용합니다

주3)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의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적용하며 분리과세로 종결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사망, 해외이주,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주4)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이하 시 퇴직소득세×70%, 10년 초과 시 퇴직소득세×60%로 적용됩니다.

□ 담보대출/중도인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하여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보대출 ^{주1)}	중도인출
가능제도	· 모든 제도	· DC형/기업형RP/개인형RP
법정사유 ^{주2)}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주3)}
		 ·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
		 · 천재지변 등
한도	· 적립된 금액의 2분의 1	· 적립된 금액 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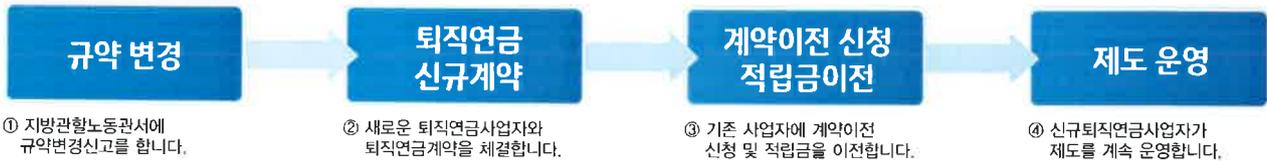
주1) 담보권 실행의 제약 등으로 현재 BK기업은행은 담보대출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2) 법정사유별 준비서류는 가까운 영업점 또는 퇴직연금고객센터 1588-2588(※53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3) '20년 4월 30일부터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계약이전 절차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거나 추가 할 수 있고,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연금을 기존 사업자에서 다른 사업자로 이전하는 것을 계약이전이라고 합니다.



□ 퇴직연금의 중단 또는 폐지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

● 퇴직연금제도 폐지

- ☞ 퇴직연금제도는 노사의 합의하에 폐지가 가능하며, 적립금은 가입 직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퇴직연금제도 중단

- ☞ 기업이 일시적인 재정압박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퇴직연금제도를 계약한 금융기관이 등록 취소된 경우에 퇴직연금제도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중단된 이후에도 근로자 적립금 입금, 급여지급, 적립금 운용, 운용현황통지 및 가입자 교육 등은 계속 수행되어야 합니다.

□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관리

생애주기에 맞는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자산관리를 통해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준비 할 수 있습니다.

● 생애주기단계별 재무목표설정

생애주기 단계						
재무 목표	· 경제적 독립 준비 · 결혼준비	· 새로운 경제 생활 적응 · 주택자금 마련	· 자녀출산 준비자금 · 주택마련자금 · 자녀 양육비	· 자녀교육자금 · 주택마련 또는 확장 자금	· 은퇴준비 · 자녀독립 및 자녀결혼 준비	· 은퇴생활 영위 · 상속준비

● 노후 설계시 고려사항

- 가족사항 - 부양해야 할 가족 / 재무사항 - 현재 보유자산 및 투자자산 파악 / 필요자금 - 노후생활 필요자금 파악
준비자금 - 필요자금 마련 / 부족자금 - 필요자금에서 준비자금을 차감한 잔액

● 분산투자 & 장기투자

- 적립금 운용시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여러 상품에 나누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투자함으로써 복리효과를 최대화하고 투자자산의 변동성에 따른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투자성향과 자산구성

- 투자성향은 일정 기대수익을 얻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투자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 아래의 5가지 성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안정형 : 예·적금이나 일반 채권형 상품으로 안정된 이자수익을 목표로 가격변동이 적은 상품에 주로 운용
 2. 안정추구형 : 안정된 이자수익을 추구하면서 소극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그룹으로 위험자산을 20%로 이하로 운용
 3. 위험중립형 : 이자수익과 자본이득의 균형을 유지하길 원하는 그룹으로 주식, 예금, 채권을 각각 3분의 1의 비율로 운용
 4. 적극투자형 : 자본이득 추구를 목표로 주식, 해외채권 등 가격변동이 큰 위험자산을 60%이상 운용
 5. 공격투자형 : 자신의 투자자산의 80%이상을 주식이나 해외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면서 High-Risk, High-Return을 추구
- 퇴직연금 운용상품을 선택할 때 위험과 수익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하며, 실적배당형상품의 경우에는 투자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상품의 투자자산의 종류 및 편입비율 또는 운용전략 등을 정확하게 이해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 부담금 안내

1. 부담금관련 주요 사항

● 부담금 수준

- DC형에 가입한 회사는 매년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에 납입 해야합니다.

● 부담금 납입시기

- 매년 1회 이상 / 노사 합의에 따라 규약에서 정한 날짜에 납입해야 합니다.

● 부담금 납입현황 확인

- 기업은행 홈페이지 <http://www.ibk.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i-ONE뱅크 APP > 전체메뉴 > 퇴직연금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분기별로 발송되는 가입자 운용현황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 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법으로 정하여진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지연이자 이율

☞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 +14일까지 : 10%, 퇴직일 + 14일 이후부터 부담금 납입일까지: 20%



●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퇴직금지급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제도일반 안내

● 수급권의 보호

☞ 퇴직연금제도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 예치함으로써, 향후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임금이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임금의 정의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DB의 퇴직금과 DC의 회사 적립금은 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임금포함 항목	·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
임금 불포함 항목	·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없이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금품,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 회사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퇴직연금지급신청이 어려운 경우

☞ 기업의 도산, 폐업 등으로 사업주가 가입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1. 위험과 기대수익이 낮은 수준인 정기예금으로 적립금을 운용
2. 위험과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인 투자 상품(펀드)로 적립금을 운용
3. 위험과 기대수익이 서로 다른 정기예금과 투자상품(펀드)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

1. IBK기업은행 퇴직연금 가이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주소 <http://welcome.ibk.co.kr>

2. 업무처리 담당자 안내 : IBK기업은행 퇴직연금 고객센터 1588-2588(#532)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0-2460호 (2020.06.08) 게시기한 : 2021.05.14 출급번호 : EV860

- 확정급여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하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88-2588)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